[일련번호 : 1]

경 기 도 체 육 회

기 관 경 고

[제　　목] 정기종합감사 태도 불성실

[소 속 기 관] 경기도승마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승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승마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종목의 발전과 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우수한 경기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감사규정」 제3조 제2항[1]는 본회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본회 관계단체 등 본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로 정하고 있으며, 협회의 경우 동 규정 제9조 제2항[2]에 따라 ‘정기감사’의 대상으로, 규정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47조의2 제1항[3]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종목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다.

1) 본회 「감사규정」 제3조(적용범위) ① 본회의 감사업무는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② 감사대상기관은 본회 및 “본회 관계단체” 등 본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로 한다.

2) 본회 「감사규정」 제9조(감사의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본회는 매년 시군체육회와 도종목단체는 4년에서 5년 주기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11. “생략”

3)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47조의 2 ①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종목단체와 시·군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감사규정」 제15조[4]에 따라 수감자료에 대한 각 자료에 대하여 감사대상 단체에 수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는 이에 반드시 협조하도록 명시하여 감사인과 수감단체간의 협조 관계를 통한 효율적인 감사의 수행을 기하고 있다.

협회 또한 「규약」 제47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에 따라 협회의 조직 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협회에 대한 본회의 감사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등)에 따라 수감자료인 기록물은 전자적 관리 및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본회의 감사를 수감하기로 한 기간이 `24년 2월 26일 ~ 2월 28일로 총 3일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예비감사 및 본감사기간에 제대로 된 기록물을 제출하지 못하여 `24년 4월 22일 ~ 4월 26일까지 변경하였다.

본회 정기종합감사를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감사 및 본 감사 기간에 2021년도~2023년도 자료가 제대로 기록화 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수 없었고 매년 사무국장 및 사무장이 교체되는 등 사무국 운영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승마협회장은

정기종합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심도 깊은 반성과 향후 정기종합감사에 동일한 사항이 발생시 협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불이익과 개인의 일신상의 처분이 주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기 바라며, 기록물 관리를 위해 문서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모든 기록물을 전자로 관리하고 본회 전자문서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 조치결과를 본회 공정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본회 「감사규정」 제15조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사자료 및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단체 및 부서는 이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일련번호 : 2]

경 기 도 체 육 회

주 의 조 치

[제　　목] 사무국 운영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승마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승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각 호를 통하여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동 조항을 기반으로 하여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여야 하고 협회규약 및 제규정에 기초하여 단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규약」 제49조(사무국)에 근거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사무국장과 직원에 대한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50조를 별도로 두어 협회의 사무국 운영에 대한 필요 사항들에 대하여 본회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0조[5] 또한 도종목

5) 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도종목단체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 및 지침(직제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라. “생략”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단체 사무국운영시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그 필요사항들에 대하여는 동조 각 호를 통하여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사무국 운영시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관련 규정 및 지침등을 제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협회는 「규약」외 별도의 규정 및 지침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협회 「규약」 제50조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0조는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본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제정 없이 본회 관련 규정의 준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협회의 경우 규약이 제정된 20**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금번 정기종합감사시 본회에 제출한 규정이 협회 「규약」 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장기간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그 기준성과 체계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승마협회 회장은

ㅇ 협회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에 의거, 조속히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등(인사 및 복무, 회계규정, 문서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여 그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 제정사항에 대하여는 절차 완료 후 증빙자료(이사회 심의자료 등)와 함께 본회 공정감사실로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경 기 도 체 육 회

주 의 · 시 정 조 치

[제　　목] 규약 및 기타규정 관리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승마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승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승마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개정하여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 「규약」 제6조(권리와 의무) 및 제53조(규정 제·개정)에 따르면 협회는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1] 및 제53조[2]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1) 본회「경기도종목단체규정」제52조(규약변경) ① 도종목단체가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도종목단체의 승인에 앞서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회「경기도종목단체규정」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 ① 도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도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 한다.
③ 도종목단체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가. 협회 규약의 미현행화

본회는 경기도종목단체의 조직운영에 필수요소인 규약 개정을 독려하기 위해 본회 정관 및 제규정 사항에 대해 안내[3]하여 경기도종목단체의 규약 및 제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각 단체 운영에 규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20**년도 **월 규약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규약에 대한 현행화(최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상위기관과 그 해석 및 적용에 오류발생이 우려되며, 기타 제규정을 통해 각종 사업 및 사무국 운영상에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문서관리 규정, 민원처리 규정,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 기타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협회 운영이 불가한 실정으로 판단된다.

나. 협회 규약 개정절차 위반

경기도종목단체가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2조(규약의변경) 제1항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 규약 또한 제52조(규정변경) 제1항을 규정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에서 제출한 「정기종합감사 수감자료」에 따르면 이사회를 개최(20**.*.**.)하면서 규약개정(안)을 심의사항으로 포함하여 의결하였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결(20**.*.**.)한 바 있으나, 본회

3) 본회 종목육성팀-8(2023.1.2.)호 및 종목육성팀-47(2024.1.9.)호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2조 제1항 및 협회 규약 제52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이사회의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총회에서 동 안건 의결 후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총회 안건의결 후 별도의 승인절차를 득하지 않아, 개정한 해당 규약 사항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협회 각종 위원회 규정 미제정

협회는 규약 제37조부터 제39조의 2[4]를 두어 각종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의 경우 위원회의 설치근거, 위원회 겸임 금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 자격,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그 운영에 기본적인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제39조 제3항에서는 본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또한 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협회 규약 제38조 제4항에서는 본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3조 제1항[5]에서도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단체의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회는 현재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협회 「규약」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9조의 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5)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3조(규정 제·개정) ①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협회는 규약 및 본회 규정에 따라 협회의 규약을 개정하고 협회의 사업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규정을 제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승마협회 회장은

ㅇ 협회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에 의거, 협회 사업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시고, 협회 규약을 현행화(최신화)하는 등 상위기관과 그 적용 및 해석의 오류발생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또한, 절차에 위반하여 개정된 규약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협회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再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경 기 도 체 육 회

주 의 조 치

[제　　목] 임원 구성 및 이사회 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승마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승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승마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규약」 제4조에서 정한 사업 수행과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을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각 구성 직위별 정수에 대하여 규약 제18조 제1항 및 제2항[6]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협회 임원은 해당 협회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도록 동조 제3항을 두고 임원의 겸직을 금하고 있으며, 규약 제27조의 2에서는 명예회장과 고문 등

6) 협회 「규약」 제18조(임원) ① 도승마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 생활, 지역,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권고)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단 최소 이사 정원은 최대 이사 정원에 과반수로 한다)
4. 감사 2명
②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도승마협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명예직’의 설치를 별도로 규정하여 임원과는 별도로 구성과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임원의 구성과 이사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가. ‘고문’ 직위 운영 부적정

협회는 규약 제18조(임원)에서 각 임원 직위에 대한 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협회의 임원에 대한 다른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협회에서 제출한 정기 종합감사 수감 자료에 의하면 20**년, 20**년 임원의 구성현황에 ‘고문(상임이사)’을 포함하고 있는데, 명예직인 ‘고문’ 직위와 임원에 포함 가능한 ‘이사’의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가 1명(정00)이 포함되어 임원의 정수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문’직위의 경우 임원과는 별도로 협회 규약 제27조의 2(명예직의 위촉) 제1항에서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위촉 절차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회는 정00에 대하여 임원현황상 ‘고문’이라는 명칭과 함께 ‘상임이사’라는 임원 직위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데 규약 제18조 임원의 구성과는 별도로 제27조의 2를 두어 명예직의 설치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문’은 임원이 아닌 별개의 협회와 관련한 명예직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고문’이라는 직위를 ‘임원’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임원의 경우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협회는 명예직인 '고문' 직위의 위촉이 필요할 경우 관련 조항에 따른 절차를 통해 별개로 설치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사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의 절차 하자를 이유로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사'로서의 단일 직위를 사용 또는 부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임원의 구성 미흡

협회는 규약 제18조(임원)에서 각 임원 직위에 대한 정수를 규정하여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사 11명 총 17명*의 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문(상임이사) 직위 1명 및 감사 2명 제외)

2021년 6월 28일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이 개정[7]되었는데, 해당 조항[8]에 따르면, '이사' 정원의 경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 이사정원에 과반수로 구성함이 타당하므로, 협회 '이사'의 경우 29명의 최대 이사 정원의 과반수인 15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었으므로, 4명 이상의 임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된다.

---

7) 동 개정사항의 경우 본회 종목지역파트-2635(2021.7.14.)호로 각 시군체육회와 경기도종목단체에 안내된 바 있음.

8)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18조(임원) ① 도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 생활, 지역,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가 각 1명씩 포함 권고)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도종목단체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이사로 한정. 단, 최소 이사 정원은 최대 이사 정원에 과반수로 구성 한다)**
③, ④ "생략"

[표1] 경기도승마협회 임원구성 현황

구분	정관	2023	2022	2021
회장	1명	1	1	1
부회장	7명 이하	5	5	6
이사	15명이상 29명이하	11	10	11
감사	2명	2	2	2

협회는 아직 동 조항의 개정사항을 규약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정수를 기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규약 개정과 '이사'의 증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승마협회 회장은

ㅇ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18조(임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약」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구성('이사'의 증원 및 현 임원중 '고문' 직위의 제외 등)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임원 구성 조치에 관한 사항을 본회 공정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경 기 도 체 육 회

주 의 조 치

[제　　목] 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승마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승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승마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및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사업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처리 절차가 있어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사업별 지침 및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경기도 회계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제3항[9]에 의거, 2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훈령* 별지 제40호서식, 제40의1호서식, 제41호서식 또는 제41의1호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서는 계약 담당자가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9)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계약의 체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 서식, 제40의 1호서식, 제41호서식 또는 제41의 1호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훈련 별표 4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이하 “지방회계법”이라 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회계처리가 신뢰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사업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고 계약절차를 무시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 하였다.

[표1] 경기도승마협회 계약 및 분할 구매 내역

사업명	구분	지출내역	금액	업체명
2023 ☆☆☆☆	분할지출	렌터카	***,370	■■■
		렌터카	***,370	□□□
	분할지출 계약 미실시	숙박비	*,***,000	▣▣▣
		식비	*,***,000	▤▤▤
		훈련장사용	*,***,444	▤▤▤
2023 ★★★★	분할지출	계시기	***,000	◐◐◐
		무전기	***,000	◐◐◐
2023 ○○○○	분할지출 계약 미실시	장비수송(상)	*,***,000	▽▽▽
		장비수송(하)	*,***,000	▽▽▽
2021 ◍◍◍◍	계약 미실시	마스크	*,***,000	◪◪◪
		손소독기	*,***,000	◧◧◧
2022 ◎◎◎◎	계약 미실시	시설사용	*,***,000	◇◇◇
2023 ●●●●	계약 미실시	장비운송비	*,***,000	♤♤♤

협회는 [표1]과 같이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보조사업에서 업체가 동일하거나 지출내역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분할하여 지출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분할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낮춰 지출하는 등 계약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표2]와 같이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객관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통해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나 `21~23년도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증빙서류가 누락된 채 지출하는 등 회계처리 절차를 신뢰하기 어렵다.

[표2] 증빙서류 관리 미흡 현황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	부실 증빙내역
경기도승마협회	사업전체	-	지출품의. 지출결의
2021 ▤▤▤▤	마스크, 손소독	*,***,000	계좌이체증, 견적서, 타견적서, 계약서
2022 ▥▥▥▥▥	장비운송비	*,***,000	통장사본
2022 ♠♠♠♠	심판비	*,***,000	심판서명부, 자격증, 통장사본
2022 ♠♠♠♠	운영요원	*,***,000	서명부, 통장사본
2022 ♧♧♧♧	홍보비	***,000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2022 ♣♣♣♣	운영비	**,***,000	명단, 명세서, 증빙사진, 통장사본 등
2022 ♣♣♣♣	홍보비	*,***,000	비교견적, 통장사본, 영상 등

[조 치 사 항] 경기도승마협회장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체육회 회계규정 등을 근거로 청렴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약 및 회계처리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관리에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라며, 보조사업 전반적으로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21년~`23년 보조사업 전체의 지출증빙을 전면검토하여 부족한 서류의 보강을 실시하고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경 기 도 체 육 회

권 고 조 치

[제　　목] 회계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실

[소 속 기 관] 경기도승마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승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승마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고, 동 규약 제40조 부터 제46조까지 재산 및 회계 관련 조항을 두어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항은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10]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부여와 그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계규정」 제11조[11] 또한

10)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략”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4. “생략”

‘회계관계직원’ 등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지방회계법」 제50조 제1항과 동일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현재 회계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아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구분 및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회계재정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승마협회 회장은

체육회 「회계규정」을 준용하는 등 협회 운영과 관련한 회계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에 따른 회계담당의 범위를 구분 · 지정하시고,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필히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체육회 「회계규정」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 등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